저장: 구광민 / 복지정책과 (2025-08-04 17:04:31)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1003
등록일자	2025. 1. 9.
결재일자	2025. 1. 9.
공개구분	대국민 공개

주무관	복지정책 팀장	복지정책 과장	주민복지 국장
			2025. 1. 9.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·지원 계획

- ╗ 지원근거
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(참전명예수당)
 - 부산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
 - O 부산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(보훈명예수당)
 - 부산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참전명예수당 지급)
 - 부산시 영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보훈명예수당 지급)
- ̄ 시행시기: 2025. 1. 1.부터
- │ 지원내역

구분	참전유공자	참전유공자	참전유공자	보훈명예수당	보훈명예수당
	명예수당(시비)	명예수당(구비)	사망위로금(구비)	(시비)	(구비)
대상	65세이상 참전유공자 (부산시 주민등록자)	참전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(영도구 주민등록자)	참전유공자의 유족 (영도구 주민등록자)	65세이상 전몰· 순직군경 유족 등 (부산시 주민등록자)	65세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(영도구 주민등록자)
금액	월13만원/1인당 *전년대비 3만원 인상	월10만원/1인당	20만원/1인당	월5만원/1인당 *전년대비 1만원 인상	분기3만원/1인당
예산	1,146,600천원	54,000천원	14,000천원	93,000천원	183,600천원
(전년도)	(972,000천원)	(동일)	(동일)	(96,000천원)	(122,472천원)

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·지원 계획

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지원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노고에 보답하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Ⅰ , 지 원 근 거

- 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(참전명예수당)
- □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- 제3조(지원대상), 제5조(참전명예수당 등)
- □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제7조(보훈명예수당)
- □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 - 제3조(지원대상), 제4조(지원사업), 제5조(사망위로금의 지급), 제6조(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)
- □ 부생역시영도구 국가보호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조 보호명예수당 지급

Ⅱ , 지 원 개 요

- □ (市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▶ 시비 100%
 - O 대 상: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 참전유공자
 - O 지급액: 1인당 월 130천원 (전년 대비 30천원 인상)
- □ (區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▶ 구비 100%
 - 대 상: 참전유공자로 영도구 주민등록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(생계급여 수급권자 제외)
 - O 지급액: 1인당 월 100천원
- □ (區)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▶ 구비 100%
 - 대 상: 참전유공자(사망일 현재 영도구 주민등록)의 유가족
 - 지급액: 1인당 200천원

- □ (市) 보훈명예수당 지급 ▶ 시비 100%
 - O 대 상: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 전몰·순직 군경 선순위 유족. 특수임무유공자 본인, 4·19혁명 부상자·공로자·선순위 유족, 국내고엽 본인'24년 조례개정에 의한 확대
 - 지급액: 1인당 월 50천원 (전년 대비 10천원 인상)
- □ (區) 보훈명예수당 지급 ▶ 구비 100%
 - 대 상: 65세 이상의 영도구 주민등록자 중 아래 국가보훈대상자
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^①, 제5조^②
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³, 제3호⁴
- ①,② 독립유공자(순국선열, 애국지사) 및 유족, 전몰·전상·순직·공상 군경 및 유족, 무공·보국 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및 유족, 4.19혁명 공로자(사망자·부상자) 및 유족, 순직·공상공무원 및 유족, 특별공로자(순직·상이자) 및 유족,
- ③ 특수임무부상자, ④ 특수임무공로자
- ※ 유족: 국가보훈부 등록 선순위 유족 1명
- 지급액: 1인당 분기 30천원

Ⅲ╸세부지원계획

- □ (市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
 - O 대상자별 지원

旣 지급대상자	신규 지급대상자	
변동사항 미발생 시 계속 지원	• 대상자명부 제공: 매월 10일까지(市→區)	
	• 명부확정: 매월 20일까지(區)	

- 지급절차
 - 지 급 일: 매월 25일(단,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)
 - 지급방법: 개인별 계좌입금

지급중단	수당환수	
• 사망 / 시외 전출	•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	
• 참전유공자 부적격 통보	•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	

○ 예산과목: 호국보훈사업지원, 호국보훈사업지원, 참전유공자명예수당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지방재원)

□ (區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

- 대상자: 참전유공자로 영도구 주민등록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제외
- O 신청절차

시기	접수처	서류	안내	
수시	- 區 복지정책과	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	- 안내문【붙임2】발송	
무시	-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	(조례 별지2호서식)	- 전화, 문자발송	

- 지급절차: (市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동일
- 예산과목: 호국보훈사업지원 호국보훈사업지원 영도구 참전유공자 지원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 수혜금(취약계층,지방재원)

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
- 대 상 자: 참전유공자(사망일 현재 영도구 주민등록자)의 유가족
- 지급기한: <u>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</u> 신청서(붙임3) 제출
- O 지급절차

① 대상자 신청서 제출	4	② 대상 적격여부 확인		③ 사망위로금 지급 (10일 이내)
신청인 → 區 또는 洞	7	區	7	區 → 유족

○ 예산과목: 호국보훈사업지원 호국보훈사업지원 영도구 참전유공자 지원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 수혜금(취약계층,지방재원)

□ (市) 보훈명예수당

○ 대상자별 지원

旣 지급대상자	신규 지급대상자	
변동사항 미발생 시 계속 지원	대상자명부 제공: 매월 10일까지(市→區)명부확정: 매월 20일까지(區)	

○ 지급절차

- 지 급 일: 매월 25일(단,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)

- 지급방법: 개인별 계좌입금

지급중단	수당환수	
• 사망 / 시외 전출	•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	
• 참전유공자 부적격 통보	•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	

○ 예산과목: 호국보훈사업지원, 호국보훈사업지원, 보훈명예수당, 301일반보전금, 02사회보장적수혜금(취약계층,지방재원)

□ (區) 보훈명예수당

- 지급자격: 지급일 기준 영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
 - 자격 요건 중복 시 이중지급 불가
 - 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제외
- O 신청방법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- 市참전명예수당, 市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로 간주
 - 신청주의 원칙 / 신청자에 한해 지급 ▷ 소급 적용 不可
- 구비서류
 - 본 인: 신청서(붙임5)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
 - 대리인: 신청서, 지급대상자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, 도장(신청인 대리인)
- 지급절차
 - 지 급 일: 분기별 말월 25일(단,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)
 - 지급인원: 1,430명(2024. 12월 기준)
 - 지급방법: 개인별 계좌 입금 원칙

지급중단	수당환수	
• 사망 / 시외 전출	•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	
• 참전유공자 부적격 통보	• 행정착오로 인한 오지급	

- * 사망자 계좌정지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
- * 전입자의 경우, 전입신고 시 신청 안내 등으로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

₩,행정사항

□ 업무 추진 철저

내 용	일 시	협조부서
○ 타 시·도 전입자 수당 신청서 접수, 통보		
○ 수당 계좌변경신청서 접수, 통보		
○ 미지급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, 통보		
○ 사망 참전유공자 유족 확인 후 신청서 접수- 신청인: 선순위 유가족 1인 (배우자→자녀→부모)- 구비서류	수시	각 동 행정복지센터
①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) 또는 유족 확인 서류 ② 사망진단서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) ③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		

붙임 1.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안내문(시비) 및 신청서.

- 2. 참전명예수당 지급관련 안내문(구비) 및 신청서.
- 3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(구비) 지급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.
- 4. 보훈명예수당 지급관련 안내문(시비) 및 신청서.
- 5. 보훈명예수당 지급관련 안내문(구비) 및 신청서.
- 6. 참고자료(국가유공자 현황, 구·군별 명예수당 지급 기준안). 끝.